



(行政刷新委員會에서 제시한)
**技術士制度의 問題點과 刷新方案에
대한 나의 意見**

(reference from administrative committee)
My Opinion about P.E system investigate point and reform plan

朴 炅 珍*
Park, Kyung Jin

1. 머리말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실에서 지난 6월 14일 기술사문제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 앞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술사관련 4가지 문제점과 4가지 방안에 대해 본인이 설명하고 제출했던 의견들을 기술함으로서 우리 기술사들이 현재 기술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이해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적어보기로 하였다.

각분야 최고자격자중 유일하게 4년전 부터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는 기술사시험은 정부의 유도정책으로 1년 1회 실시때보다 연평균 5배이상 합격하여 많은 젊은 기술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기술사활용책은 오히려 후퇴하여 기술사들의 사기와 의욕이 저하하고 있다.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문민정부에서 기술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책이 필요하며 한국의 기술발전을 이끌어갈 기술엘리트 집단의 존속 차원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올바른 판단과 정책형성 부서와의 상호협력으로 바람직한 정책결정과 기술입국에 적합한 정책집행이 실시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

2. 문제점 4가지에 대한 의견

1) 문제점 1

기술사 수급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정책입안 및 추진의 효율성저하 초래

●의견●

(1) 건축사시험을 건설부가 건축사협회에 위임하여 실시하듯이 기술사시험은 한국기술사회가 위임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경제가 발전했던 3공, 4공, 5공때는 기술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기술정책이 잘못된 6공때는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경제정책과 기술정책은 상호 밀접하므로 기술사수급활용부서를 종전대로 경제기획원으로 환원을 원한다.

과학기술처는 6공이후 기술사와 기술인을 경시하고 오직 과학정책만 치중하고 있으니 과학처로서 과학정책만 관장함이 타당하다.

물론 정부조직개편문제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기술인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과학처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경제기획원으로 환원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3)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은 기술사를 잘 활용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한 공공사업의 설계와 감리를 기술사의 고유업무

*한국기술사회 정책위원, 전기통신기술사

로 정착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산업발전에 공헌하게 하는데, 과학처의 무관심과 기술정책 부재로 기술사활용이 점점 배제되고 있다.

2) 문제점 2

부처별 기능과 분야별 기술사주무부처의 불일치로 기술사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능부처의 무관심 초래.

◀의견▶

(1) 과학처는 기술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술사고유업무로서 최소한 설계, 감리, 자문, 평가등은 공공사업발주시 기술사를 명기하도록 하고 그외는 각사업부처에 활용권을 위임하여 활용이행상황을 체크하고 활용책이 부족한 부처에 활용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산업구조상 활용가능성이 별로없는 기술사종목은 통합 또는 폐지하고 활용이 잘되는 분야는 이미 합격된 기술사가 용역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용역 분야에 미진출기술사가 약 75%에 이르고 있다.

유사종목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문제점 3

기술사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자격검정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충분한 인력배출에 애로점이 있음.

◀의견▶

(1) 현재의 기술사시험 운영제도를 파악하지 못한 지적이다. 대학교수(박사) 위주의 운영에 기술사의 권한은 크지 않으며 교수채점위원이 오히려 응시자의 실력없음을 한탄하고 낮은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2) 기술사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과 동등이상의 최고 자격자인데, 경제기획원 관할에서 과학처로 옮긴 후 부터 점점 활용제도가 완화되어 노력한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비해 응시자가 적으며, 6개월이나 실시하고 과학처와 건설부 등이 합격

자를 늘리라는 유인책으로 채점위원의 객관성에 심리적 영향을 행사하여 실력이 없는자도 합격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본인도 기술사시험 채점시 경험해 보았지만 기술사채점위원은 많은 합격자를 바라고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지만 대학교수들의 평가 점수에서 응시자들의 실력수준을 알 수 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대단히 잘못 알고 있으며, 선행될 사항은 기술사 고유업무가 정착되고 활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응시자가 많아야 합격자도 많아질 것이다.

(4) 다음은 기술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일본기술사들의 응시자의 합격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주목할 사항은 오직 기술사시험만 1년에 2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사 합격율은 두배이다.

<표 1>의 자료는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의 근거에 의한 것이며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표 1> 합격율 비교표

시험구분	응시년도	응시자수 (명)	합격자수 (명)	합격율 (%)
기술사	89년(32회)	2,123	266	13
	90년(33회)	2,898	323	11
	91년(35회)	3,058	467	15
	92년(37회)	3,713	512	14
변리사	92년	4,281	30	0.7
	93년	4,923	30	0.6
	94년	5,112	30	0.6
감정평가사	90년	16,383	102	0.6
	91년	8,031	102	1.2
	92년	7,658	101	1.3
	93년	9,468	130	1.4
일본기술사	89년	13,169	1,345	10

(5) 기술사제도의 잦은 변경과 의무고용제 완화 또는 폐지 등의 풍문으로 응시자가 적은 데도 높은 합격율만 선동하여 기술엘리트집단을 붕괴시키고 있다.

기술사는 현재 모든 자격시험중 합격율이 제일 높으며 변리사시험과 비교하면 합격율은 연

평균 40배 이상이다.

1994년 변리사시험 응시자는 5,220명에 합격자는 30명으로 합격율은 약 0.6%이다.

(6) 일본 기술사시험의 응시조건도 한국과 비슷한데, 일본의 사회관습이 기술용역실제 감리등은 건축사가 건축설계 등을 고유업무로 하듯이 기술사만 하도록 활용이 보장되어 응시자가 많고 합격율은 한국보다 낮다.

4) 문제점 4

개별법의 의무고용제도로 기업의 진입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기업의 부담을 초래 및 자격대여 등의 부조리 발생소지,

◀의견▶

(1) 의무고용을 완화하면 오히려 전문용역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술인력과 자본, 그리고 사무실평수 크기 등의 기준없이 기술인력중심업무인 엔지니어링활동을 대폭완화하여 허용한다면 기업창업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입찰전용 형식적인 엔지니어링 업체가 급증하고 입찰브로커만 늘어주게 될 것이다.

(2) 한 설계팀을 보유한 기존 엔지니어링 업체가 여러 개의 입찰전용회사를 창업해야 입찰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대신, 누구나 똑같이 입찰전용 형식적인 회사를 창업하게 되어 일량은 결국 1개 회사때와 같은데, 관할해야 하는 업체수가 많아 직원의 증가, 관리업무 폭주, 사무실임대료 증가, 세제상의 과중한 부담 등이 오히려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함을 행정쇄신위원회는 알아야 한다.

(3) 이와같은 현상은 기술용역물량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형식적인 회사출현으로 혼란된 용역업체에 주지않고 발주처가 자체설계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수 증가와 용역물량 증가는 역비례하는 분야도 있으며, 지금의 입찰방식으로는 종전의 건실한 회사도 해체 및 파산하게 하는 한국의 엔지니어링업체 분할정책이고 보니, 분화된 회사로는 해외경쟁력도 잃게 되며 최근 허울좋은 규제완화 구호 아래

한국의 엔지니어링업체는 빈사상태이다.

(4) 기술인력활용면에서도 낭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까지 건실한 용역업체의 대리, 과장, 차장을 하다가 창업이 쉬우니 대다수가 형식적인 회사를 만들어 모두들 사장만 하게 되니 실질적인 기술용역근무자가 적어져 국가적인 인력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형식적인 회사의 사장들은 운 좋게 낙찰되기를 바라며 입찰로비와 입찰현장에서 소일하는데, 계속 정부가 현재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일명, 기술 기술진흥법)을 유지하여도 행정쇄신위원회는 구경만 할 것인가 묻고 싶다.

(5) 전문용역업체는 일본과 같이 "기술사 사무소"로 대체하고 종합과 산업설비 등 큰 업체만 전문경영인이 기술사를 의무 고용하여 운영하여야 해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6) 한국의 기술용역업체가 현재의 제도로 약화되어 외국에 진출은 커녕 국내기술용역도 풍부한 기술인력을 확보한 외국의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넘어가게 한다면, 설계시 system에 그들 국가의 제조기기를 사용하게 할 것이며, 총공사비의 약 3%인 설계비만 외국으로 넘겨주는게 아니라 한국의 제조업과 고용효과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7) 자격중대여 지적에 대한 의견은, 대여를 논한다면 기술사보다 한약사, 약사 등에 더 문제시 하여야 하고, 만일 대여한다면 자격정지나 취소조건이 되는데, 기술사가 대여로 인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본인은 아직 보지 못했다. 기술사를 모함 잘하는 기술용역브로커들이 유포한 풍문에 의한 질문이 아니라면 대여한자의 명단과 대여로 인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3. 쇄신방안 4가지에 대한 의견

1) 쇄신방안 1

기술사 수급관리 종합기능 일원화

- 현행 노동부의 자격검정계획에 대한 검토

토, 조정기능을 과학적으로 이관 -

◀의 견▶

찬성하며 시험실시업무는 한국기술사회가 위임받아 관장하여야 타당하다.

2) 쇄신방안 2

분야별 기술사관리 주무부처의 재조정

◀의 견▶

찬성하며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응시자가 지나치게 적은 분야는 통합조정이나 폐지하여야 하고 활용이 잘되는 분야는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너무 많은 종목은 종목선정때 대학교수들이 공대 모든 전공분야를 단순히 망라했다고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분야와 종목이 한국보다 매우 적다.

3) 쇄신방안 3

기술사의무고용 완화 및 배출인력 확대

- 개별법으로 규정된 기술사고용의무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분야별 진입제한 해소 및 업체부담 경감,
- 각 개별법의 기술사 의무규정을 기술사 또는 대체기술능력보유자의 선택적 고용 규정으로 개정,

◀의 견▶

(1)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 3”의 의견참조요망.

(2) 의무고용제도가 완화되고 업무특성상 기술력중심인 기술용역업체를 누구나 쉽게 창업한다면, 형식적 입찰용회사 급증으로 업체당 낙찰율은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입찰용자회사를 많이 창업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업체부담이 가중된다. 이 문제점은 지금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 대체기술능력자 선택적 고용은 불가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요구한다고 사법고시에 불합격자나 회계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그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대체능력자가 변호사업이나 회계사업을 허용한다면, 면학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외국과 비교해 점점 퇴보할 것이며 일확보를 위한 저가경쟁과 브로커 등의 활약으로 일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4) 같은 국가 헌법하에서 절대불가사행임. 행정쇄신위원회가 언급한 대체기술능력 보유자들은 기술사시험 응시자격자들이고 응시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받고 응시하여 실력부족으로 불합격한 자들이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 준다면 우선 평등의원칙에 위배된다. 만일 행정쇄신위원회가 대체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하나의 관례가 되어 각종채용시험과 자격시험불합격자들은 공부를 그만두고 행태위에 대체규정만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5) 기술사 의무고용인원수를 줄이더라도 대체기술능력 보유자의 선택적고용규정은 불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즉, 헌법상 동등한 권리로서,
- 변호사 → 대체법률능력보유자로,
- 회계사 → 대체회계능력보유자로,
- 건축사 → 대체설계능력보유자로,
- 의사 → 대체의술능력보유자로 등등과 함께 대체능력자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동등의 권리 위반이며 기술인을 자극하게 되고 위헌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6) 대체기술사 방안은 기술사에 대한 모독이며 기술엘리트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4) 쇄신방안 4

산업계 수요급증분야에 대한 배출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사검정제도를 개선,

- 일정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자격완화, 시험난이도 조정, -

◀의 견▶

(1) 기술사고유업무 확정이 배출인력확대요건임.

건축사와 같이 설계, 감리, 평가, 자문등이 기술사 고유업무로 정착한다면 시험응시자가

많아지고 합격자도 많아질 것이다.

94년 5월 26일부터 과학처장관에게 등록한 지 1년만에 250여개에 이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업체기술사가 설계, 감리, 자문, 검사, 평가 등을 고유업무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등과 같이 개별활동이 보장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용역업체로 진출하여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 75%에 이르는 미진출기술사를 활용하게 되고, 시험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응시자가 증가하여 합격자가 많아지게 되는 진리를 인정하고, 선진외국과 같이 제도적으로 우선 기술사고유업무 확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행정쇄신위원회의 시급한 정책결정으로 기술사고유업무를 정착시키면 “방안 4”는 해결된다.

(2) 시험과목에 외국어시험 추가필요

국제화추세에 부응하여 변리사, 회계사자격 시험과 같이 영어시험 등이 당연히 부과되어야 한다.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해외에 진출하거나 선진국서적을 소화하여야 하는 기술사에게 외국어시험이 필요시하고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3) 기술사고유업무확보 등 제도적 개선없이 인기하락으로 인한 적은 응시자중에서 시험난이도 조정으로 배출인력만 확대한다는 발상은 기술사 → 기사 1급으로 수준을 낮추게 되어 기존기술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첨단화, 고도화의 기술추세에 역비례하는 등 문제점이 출현되므로 다른분야 최고자격시험과 바란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시험응시자격완화는 자격제도의 특성상, 또 외국의 사례에 비교하여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낮춘다면 기사시험과 기능사시험도 같은 비율로 낮추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술사는 산업계의 박사임을 인식하고 수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4. 미국의 기술사담당공무원 선발규정

미국의 많은 주와 지방정부는 엔지니어링 담당공직에 기술사가 보직되어야 한다고 법규에 규정하고 있다. 선진각국은 엔지니어링산업과 기술사활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변호사의 변론업무의 실수는 한사람의 원고에게 피해를 주지만 와우아파트 붕괴나 구포역철도사고 등은 많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UR에 대비한 한국의 엔지니어링정책은 현명한 대안없이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어 자격없는 자나 외국업체가 한국의 엔지니어링분야에 쉽게 진출하게 하고, 형식적인 업체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구성되어 있음은, 복합적인 기술용역업을 이해하는 기술사를 해당공직에 선발하는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마침 문민정부가 전문직 특채비율을 넓혀가고 있으니, 해당부처에 기술사가 없으면 특채하여 기술용역업무와 기술인력업무를 관장하게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 5월 10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엔지니어링기술수준평가 및 기술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 공청회연사선정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주체인 기술사를 한명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엔지니어링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담당공직자의 실책의 표본이며 이런 종류의 공청회라면 P.E와 P.H를 절반씩 선정하여야 정당 할 것이다. 또한 P.E는 대부분이 공학석사학위자 이상임을 감안할 때 엔지니어링기술평가를 논할 수 있는 P.H라면 기사자격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를 소지한 자를 선택함이 좋을 것이다.

5. 맺는말

매일경제신문(94. 4. 19) 사설을 보면, 시장 진입 완화로 더 많은 건축업자가 허용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건축물의 견고성, 안정성 또는 편리성 등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듯이, 기술용역사업자의 양적확대와 과잉경쟁이 국가경쟁력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건축물의 품질이 건축물에 대한 제반 기술적 규제에 의해 향상되듯 기술용역산업의 국가경쟁력도 고도의 기술규제에 의해 조정된다고 하였다.

UR와 행정규제완화를 잘못 이해한 한국의 담당공직자들은 기술규제도 완화가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언뜻보아 수월한 듯한 미국의 자동차시장이 각종기술규제로 진입하기 힘들고, 통신시장 또한 수천쪽에 달하는 연방규칙 등 기술장벽으로 둘러쳐져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같이 기술인력의무고용 완화방안을 기술사 고유업무가 정착되기 전에 완화하거나 실질적 내용규제없이 진입장벽만 낮추는 일은, 자칫 사업자들로 하여금 기술개발은 뒤로한 채 외국자본의 거간꾼 또는 하도급자로 전락하게 하고 기술종속으로 퇴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지구촌의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10,000여명의 기술사들의 활용책을 강구하고 탁상행정을 지향하며 열심히 연구하는 기술정책담당공무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술사들도 권한위에서 잡자는 것을 중

지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국가산업발전을 증진시켜야하는 의무를 다하며, 한편으로 기술주권을 침해하는 요인들을 모든기술사들이 힘을 합쳐 방어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사와 비슷한 수준인 자격자이고 서비스업인 변리사와 회계사는 UR에 대비하여 외국에 진출할 때도 자격자가 나가고, 외국의 자격자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회계사의 경우 국내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고 한다. 또 그들 자격자는 무턱대고 많이 합격시키라는 강요도 없다고 한다.

제41회 기술사시험(94. 6. 7) 필기합격자는 사상유래없이 1,063명이다. 5년전의 5배이며 가을시험까지 생각하면 무려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분야에만 가해지는 불이익의 대우에도 초연하기만 한 것이 최선을 아닐 것이다.

이젠 기술사숫자도 급증하고 있으니 다른 전문직과 같이 UR에 대해서도 자격자중심으로 외국의 기술자격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 한국의 기술자격자가 외국에 진출하도록 하는 하여 줄 것을 당국에 바란다.